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6
----------	-----

제출년월일 : 2000.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안 제2조제1항,제4항)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안 제9조제1항및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안 제21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안 제2항,제3항)

개정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개정조례안 : 불입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입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입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的人数은 통합 또는 병설학교의 전체학생수를 기준으로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32조제10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법 제32조제1호내지 제9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내지 제11호”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법 제32조제9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영 제58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범위에서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③(생략)</p> <p>④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 또는 병설 학교의 전체학생수를 기준으로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삭 제)</p>
<p>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5.(생략)</p> <p>② 법 제32조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p>	<p>제9조(심의사항) ① 법 제32조제1항 제12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p> <p>.</p> <p>1.~5.(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p> <p>.</p> <p>.</p>
<p>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②(생략)</p> <p>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객실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삭 제)</p>

관계법령발췌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 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인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처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전화 (0431)279-0229 /전송(0431)271-869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과장 박영하 사무관 연승홍 담당자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 - 78

시행일자 2000. 03. 31.

(공 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람	교육감	노경	지시	
접수	일자	2000. 3. 31.	결재	교육감
	시간			9시 45분
	번호	1888	공립	기획관리과장
처리과	기획관리과		공립	기획관리과장
담당자	신영석		의회담당	이찬동
심사자			심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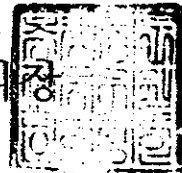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사결과
111-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5	2001학년도초·중통합운영학교설치계획안	원안가결
111-6	학교설립계획안	원안가결
111-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
111-8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0 - 32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3월

충청북도교육청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587억 9,778만 3천원이 증액된 8,115억 4,114만 6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8억 9,159만 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8억 8,156만 6천원 증액 ○ 세출예산 학교교육 514억 815만 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억 1,923만원, 급여·복지 39억 4,032만 3천원, 교육행정 32억 2,604만 4천원, 기타경비 403만 1천원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를 “재직기간 중에” 로 기간 확대 ○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 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 으로 확대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 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 ○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 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 ○ 군입대에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